

##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임용,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**제3조(임용절차)**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,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4조(임용기간)**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심사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.

**제5조(임무 및 역할)**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학협력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
2. 산학협력 연구 및 기술이전
3. 창업 및 취업지원
4. 학생 현장실습 지도
5. 산학협력사업 참여 및 진행
6. 산학협력교육 등의 산학협력 사업 활동 전반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(2017.7.17.개정)

**제6조(재임용 및 승진임용)**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원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하며,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정한다. (2017.7.17.개정)

1. 교원으로서 연구(45점), 교육(45점), 봉사(10점)으로 구분하여 총100점으로 하고 각 평점영역 점수를 합산하여 최소 70점 이상을 합격평점으로 한다.
2. 연구실적물이 6년 기준 600%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갖추어야 하며, 전공과 관련된 학술지에 논문 3편 이상이 되어야 한다.
3.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심사 시 심사평점 내역이 합격기준의 점수를 받아 총장에게 임용 동의서를 제출한다.
4.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동의된 자를 이사장에게 재임용 제청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 관련 최저 소요연수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. (2017.7.17. 개정)

1. 최저 승진 소요연수 및 요건

구 분	기간	연구실적	필수연구업적
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	6년	승진소요 기간 중 600%	① 국외학술지(A&HCI, SSCI, SCI, SCOPUS 등) 2편 ②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후보지 3편

구 분	기간	연구실적	필수연구업적
		이상	③ 전공과 관련된 국내학술지 4편 * 위 ①,②,③ 중 택일 할 수 있으며, ①,②에 속한 논문 1편은 ③에 속한 논문 2편으로 대체가능하며, 단독연구 기준임. * 상기 논문 이외 본교 교수논문집 신학과 신앙에 논문 3편 이상이 되어야 함.
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	6년	승진소요 기간 중 600% 이상	① 국외학술지(A&HCI, SSCI, SCI, SCOPUS 등) 2편 ②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후보지 3편 ③ 전공과 관련된 국내학술지 4편 * 위 ①,②,③ 중 택일 할 수 있으며, ①,②에 속한 논문 1편은 ③에 속한 논문 2편으로 대체가능하며, 단독연구 기준임. * 상기 논문 이외 본교 교수논문집 신학과 신앙에 논문 3편 이상이 되어야 함.

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연구실적 심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 (2017.7.17.개정)

1. 심사위원 3인 중 1인은 임용될 자 보다 상위적인 타 대학 교원에 위촉한다.
2.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 상위적인 교원으로 전공 주임교수 및 세부전공과 일치하는 교원으로 위촉한다. 단, 본 대학에 세부전공 교원이 없는 경우 타 대학 교원으로 대체한다. (2020.2.25.개정)
3. 비전공 교원은 연구실적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4. 학위논문은 연구실적 심사를 생략한다.
5.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.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.
6. 연구실적물의 인정 및 평정은 교원업적평가 관리규정의 <별표 2 연구업적평가 기준>에 준한다.

④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승진임용 심사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반영한다. (2017.7.17.개정)

1. 산학협력 실적
2.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·창업 지도 실적
3. 교내외 봉사
4. 연구실적

**제7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,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.

3-3-19 산학협력 중점교원 인사규정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